# "자율과 신뢰 속에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시흥초등학교" 학교 생활 · 인권 규정 (개정안)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학교생활 · 인권 규정'이라 하며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 ·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적용근거

-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제1항 제7호 규정과 관련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 · 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 제4조 구성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교감), 교원 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 대표(1명),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 중 학생위원의 비율은 정족수의

1/3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③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제5조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 의결정족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의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정보 공시한다.

#### 제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 1 절 학생 권리와 의무

#### 제11조 권리

-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⑨ 청소년 미혼모, 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 ⑩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①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 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② 전문상담(생활, 진학, 진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③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제12조 의무

-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제 2 절 기본 생활

#### 제13조 등교

- ① 교실에 9시까지 입실한다.
- ② 운동장에서의 수업 이외의 다른 활동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만 허용한다.
- ③ 반드시 도보로 실외화를 신고 등교하여야 하며,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교실 출입이 가능하다.
- ④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 담임선생님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

# 제14조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

- ① 화장실 사용 시, 용변 후에는 물을 내려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 칼 긁기, 부주의 또는 난폭한 행동 등으로 공공 기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공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 ③ 점심 식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 ④ 밥은 천천히, 반찬은 골고루 먹으며, 남은 음식은 국그릇에 모아 잔반통에 조용히 버리고, 선생님 확인 후 식판 및 수저를 정해진 자리에 놓는다.

# 제15조 수업 준비 및 수업 시간

- ①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자기 자리에 앉아 차분히 수업 준비를 한다.
- ② 수업 중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나 행위는 삼가며, 단정한 복장 및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 ③ 전담 수업 또는 야외 수업 시에 질서를 지키며 담임선생님이 인솔하여 이동한다.
- ④ 수업시간에는 지도교사의 허가 없이 특별실, 복도, 운동장, 외부 놀이터, 문방구, 슈퍼 등을 출입할 수 없다.

#### 제16조 실내 예절

- ① 실내에서는 우측통행 및 조용히 걷기를 기본으로 한다.
- ② 본인이 생산한 휴지 및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
- ③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 ④ 교실이나 복도의 창가 및 책걸상에 올라가지 않으며, 운동장을 향해 소리 지르거나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한다.
- ⑤ 교내외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는다.

#### 제1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생활인권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 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개최할 때
- ② 방과 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18조 하교

- ①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간다.
- ② 오후 4시 40분 이후에는 학교 건물 내 출입을 금한다. 단, 돌봄 교실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교사 및 교감선생님께 허락을 맡은 후 출입할 수 있다.
- ③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외화로 갈아 신고 하교하며, 낯선 사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지 않는다.

#### 제19조 하교 후 생활

- ① 하교 후 생활은 부모님의 지도하에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불건전한 유해업소(PC방, 만화가게, 오락실 등) 출입은 금한다.
- ③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청소년유해매체의 소지 및 사용을 금한다.
- ④ 불량 서클 가입을 금하며, 등.하교 시 불량배에 의해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선생님께 신고한다.
- ⑤ 위험한 놀이(레이저 서바이벌 총 놀이, 시체놀이 등)를 하지 않는다.
- ⑥ 하교 후 생활 시 친구들이 불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린다.

#### 제20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④ 학생은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⑤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⑥ 교사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교육에 힘쓴다.

#### 제21조 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 ⑧ 사전에 컴퓨터 이용시간을 정하고 이를 지킨다.

# 제3절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 제22조 학교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 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외에서의 싸움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또한, 잘잘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응하는 것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싸움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를 피하거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본다.

- ③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에 준하는 학생은 보호를 해주어야 하며, 비장애 학생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에 준하는 학생이 위협을 가할 경우 직접 대응하기보다 그 상황을 피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 ▶교육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경찰청 범죄신고 112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⑤ 기타 모든 사항은 학교폭력 및 대책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 제23조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정의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그동안 학생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잘못에 대한 체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던 관습을 없애고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24조 본교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학교구성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②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시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은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방법에 한한다.

# 제25조 본교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대상자

- ① 수업 중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전체 학생에게 수업 분위기를 흩뜨리는 행위를 하는 등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여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한 경우(소란, 심한 말장난 등)
- ②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지시를 불응하는 경우(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는 행위 등)
- ③ 자타의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금품갈취, 도벽 등)
- ④ 집단 따돌림(왕따)을 조장하는 학생이나, 그에 동조하여 다른 학생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준 학생이나, 피해를 당하여 고민하는 학생
- ⑤ 수업준비(교과서, 준비물 등)를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는 학생
- ⑥ 타인에게 인격모욕적 표현 및 욕설을 한 학생
- ⑦ 가정의 사정으로 교육적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
- ⑧ 흡연, 약물 오.남용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 ⑨ 담장, 나무, 교문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오르거나 뛰어넘는 행위
- ⑩ 개인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타의 피해가 가는 행위
- ⑪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타인을 비방.비난하는 행위
- ⑩ 이외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학생

# 제26조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절차와 방법

- ①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대상이 된 학생은 자신을 특정한 문제 있는 학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 ②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1차 교육은 담임교사가 하고 1차교육 후에도 제25조의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대상으로 해당될 경우 2차교육은 학부모, 동학년 협의회에서 지도하고, 3차교육은 학부모, 교감, 교장이 교육한다.
- ③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대상이 된 학생은 교실 또는 상담실에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한다.
- ④ 3차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등.하교 시 학부모가 동행한다.
- ⑤ 학부모 동행 등.하교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단계별 선도조치를 결정한다.(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이 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 제27조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결과 처리

- ①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상담한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 ②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상담 및 생활지도 내용은 다른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4절 교육

#### 제28조 자기주도적 학습

- ①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급별 회장, 부회장이 선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 ③ 교실을 항상 정리 정돈하여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 제29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교육 과정에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포함시킨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및 생활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한다.
- ⑥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제30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도서실을 이용하여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힘쓴다.

- ③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용한다.
-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5절 사생활의 보호 및 정보

#### 제31조 용의사항

-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하며, 책가방은 학생용 가방을 사용한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 ③ 모든 소지품에는 반, 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여 분실을 예방한다.
-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⑤ 교실 수업시간에는 모자를 벗고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필요이상의 귀중품 및 금품은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맡기도록 한다.)
- ⑦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제3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33조 휴대전화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는 있으나 교육활동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학력 평가 및 학생 전체의 평가 및 검사 실시의 경우 휴대폰 사용은 동의를 얻지 않고 금할 수 있다.

#### 제34조 소지품 검사

교직원은 안전 및 생활지도 목적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다음 각항과 같다.

- ① 소지품 검사는 안전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방화물 소지 행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품 소지 행위 등) 및 생활지도 목적을 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하지 않는다.
- ③ 안전상의 이유로 실시하려는 소지품 검사에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법적 보호자 (학부모, 조부모, 위탁기관장 등)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대면 통보하여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하며, 이 때는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해당 학생과 동성인 복수(2인 이상)의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한다.
- ④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소지한 위험 물질로 위법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는 학교전담경찰관에 연락하여 보호조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안 발생 즉시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인지시키고 적법하게 인계조치 하도록 한다.

# 제35조 개인 기록물

교직원은 일기장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으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열람한다.

# 제6절 표현의 자유

# 제36조 참여의 자유

본교 학생은 학교홈페이지, 전교학생자치회를 통해서 학교생활이나 교육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견 내용과 그것과 관련된 일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37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7절 진로교육

#### 제38조 진로교육

진로 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형성에 힘쓴다.
- ③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4장 학생자치회

#### 제39조 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학급) 재학생으로 한다.

#### 제40조 권리 및 의무

- ①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 (협의 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 및 의견 청취
- ⑥ 기타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 제42조 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되면 정당한 효력이 발생된다.

# 제43조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

## 제44조 부서

전교(학급)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②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③ 생활부 : 학교 내 캠페인 활동 관한 제반 사항
- ④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⑤ 봉사부 : 안전하고 깨끗한 교내 환경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제45조 직무

학생회(전교 및 학급)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46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전교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학급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③ 전교회장 및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④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제47조 전교학생자치회

- ① 구성
  - ⑦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①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활동
  - ⑦ 전교 학생회는 자율 캠페인·봉사 활동 및 정기회의, 임시총회의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 ① 통상 매월 2주 금요일에는 학생중심 봉사 및 캠페인 활동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4주 금요일 7교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 전교학생회 회원 1/2이상 또는 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① 전교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의 1/2 찬성으로 하며 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48조 회칙개정

회원 정수 1/3 이상 또는 지도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49조 목적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선도처분 등 학생생활의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 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장 교감(운영 총괄)이 위원장이 되고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 생활인권담당교사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 ③ 위원 각 학년 부장 및 생활인권담당 교사와 학교장이 위촉한 교사로 구성한다.(생활교육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함)
- ④ 학생생활 중 제기된 학생사안(분쟁)등을 심의하고 학교 내의 봉사 대상 이상의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 제51조 심의 . 의결

-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하다.
- ②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 서면 통지 내용
- 1.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 이유
-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 ③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나 학교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회 의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2. 학생 선도처분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의결.처리한다.

# 제52조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처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선도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기회 및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을 보장한다.
- ⑤ 선도결과 공지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

# 제53조 학교 내 재심청구

- ①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이의제기 및 재심의가 가능하고 조 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청구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 제54조 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53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 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종류 및 방법

# 제55조 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56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 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 이수
  -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 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7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통보

#### 제58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9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 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제60조 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 제61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교사별 평가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사별 평가에는 참여 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하다.

## 제62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 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